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신약개발학과
사업단장 강남숙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제정 2016. 06. 01
일부개정 2016. 11. 08
일부개정 2017. 01. 02
일부개정 2017. 06. 07
일부개정 2018. 09. 12
일부개정 2019. 09. 27
일부개정 2019. 12. 02

I.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의 사업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행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근거

한국연구재단과 충남대학교의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규정 등을 상위의 규정으로 하고 사업단 운영의 세부 지침을 만든다.

제 3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BK21 플러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4조 사업단의 구성

본 사업단의 구성은 사업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 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과 참여교수 전원으로 이루어지며 사업단 내규에 없는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사업단의 예산에 관한 사항
- ③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④ 해외 장단기 연수생 선발에 관한 사항
- ⑤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II. 집행

제1장 지원 대학원생 선발 기준

제 6조 목적

본 규정은 BK21 플러스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 기구

본 규정 시행을 위한 BK21 플러스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 8조 장학위원회 구성

장학위원회는 사업단장(위원장),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BK21 플러스 사업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장학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관한 사항
- ③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제 9조 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1.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2.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방학기간에는 지도교수의 허가를 얻어 1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⑤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 ⑥ 참여대학원생은 참여인력 서약서(별표 5호 서식)를 제출한다.
- ⑦ 참여기간 중 취업이나 휴학, 프로젝트 참여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보고 해야 하며 BK21 플러스 사업지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⑧ 취업이나 휴학 등 기타 사정으로 임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장학생 포기 사유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⑨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자와 무관하게 2월 말, 8월 말일까지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⑩ 사업단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단, 예외사항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한다.)

제 10조 지원대학원생 및 지급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와 실력도모를 위하여 학생별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한국연구재단 제출명단 기준인 4/1, 10/1 까지 참여대학원생의 요건(전일제 및 재학생)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취소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휴학, 자퇴, 취업 등의 사유에 의하여 학기 중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외부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의 경우는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 ①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60만원이상 지급가능)
- ②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00만원이상 지급가능)
- ③ 지원대학원생은 연구장학생 활동계획서(별지 3호 서식)를 매학기 제출한다.
- ④ 지원대학원생은 연구장학생 활동보고서(별지 4호 서식)를 매학기 제출한다.

제 11조 지원기간

과제수행기간인 2016. 03 ~ 2020. 08까지 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를 위하여 학생별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2조 평가기준

신입생은 [표1]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등급(C(기본))을 나눈다. 재학생은 [표2]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등급(A, B, C(기본))을 나눈다. 평가 점수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고, 우수학생(A, B 등급)의 경우 최저 지급액인 석사 60만원, 박사 100만원이상 지급이 가능하고, 등급의 범위는 평가 점수 및 지원대학원생수에 따라 매학기 달라질 수 있다. 선발 시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을 우선 선발하며, 장학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표1] 대학원생 평가 기준(신입생)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면접고사	학과 입시의 면접고사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전적대학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평균 평점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학부성적 전체성적
전적대학 (박사과정)	평균 평점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직전과정 전체성적

[표2] 대학원생 평가 기준(재학생)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대학원 직전학기	평균 평점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직전학기 (수료생의 경우, 수료생 등록 직전학기)	
논문실적	1) SCI(E) 논문 (on-line published 인정)	한 편당 200점	최근 1년	
	2) 비 SCI(E) 논문 (on-line published 인정)	한 편당 50점	직전학기	
특허	국 외	출원	한 건당 100점	직전학기
		등록	한 건당 300점	
	국 내	출원	한 건당 50점	직전학기
		등록	한 건당 150점	
학술발표 (최대100점)	국 외	30점(Oral)		직전학기
		20점(Poster)		
	국 내	15점(Oral)		

		10점(Poster)	
기업체인턴 (최대100점)	한 달당 50점 만점으로 일일 환산		직전학기
수상실적 (최대100점)	한 건당 50점(한 건당 점수 / 동일 수상자수)		직전학기
논문 및 학술발표 반영비율	학생이 제 1저자인 경우		첫 번째 학생저자 100%, 두 번째 학생저자 70%, 세 번째 학생저자 이하 30%
	학생이 제 1저자가 아닌 경우		첫 번째 학생저자 80%, 두 번째 학생저자 50%, 세 번째 학생저자 이하 10%
특히 반영비율	한건 당 점수 = 1/n(출원인 or 등록인)		
BK21플러스 참여율 점수(최대50점)	1) 한 건 당 25점(행사에 따라 참여점수 변경가능) 2) BK21플러스 창업교과목 수강 시 15점 가산점 부여 (1년에 최대 15점)		직전학기

제 13조 성과급

제 12조에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금액 외에도 [표2] 대학원생 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학생이나 사업단에 기여한 학생의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장 참여교수 선발 및 평가 기준

제 14조 목적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단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

제 15조 참여교수의 선발기준

참여교수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사업단 참여교수 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② 사업단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표3] 참여교수 평가 기준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Cell, Science, Nature를 포함한 IF가 20이상인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④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6조 참여교수의 교체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①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 ②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 ③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 17조 평가대상 기간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평가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다.

- ① 평가는 상기 제15조(목적)에 근거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시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BK21 플러스 사업 개시 첫해 4차년도 평가는 1년간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제5차년도의 평가는 최근 2년간, 제6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 18조 평가 및 성과급 지급기준

[표3]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사업단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 ②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③ 사업단 기여도에 대한 참여 교수의 평가 시 사업 단장의 평가 점수 비율을 최소 30% 반영 하도록 한다.
- ④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3]에 따른다.
- ⑤ 4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순위	1	2	3	4	5	6	7
비율	21%	19%	16%	14%	12%	10%	8%

[표3]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지급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참여교수 실적(40점)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논문 환산편수 합 × 100) ※ 논문 환산편수 [표3]
산학 협력 실적(100점)	특허 등록 실적(특허 환산 건수 × 200) ※ 특허 환산건수 [표4] 특허 출원 실적(20점)
	기술 이전 실적(20점) + 100만원당 1점
	사업화 실적(20점)
	연구비 수주 실적(100만원당 1점)

	창업 실적(20점)
기여도 평가(60점)	사업단 기여도 - 사업단장 평가 총점 중 30% 반영
총점	200점

[표4] 논문 환산 편수

논문 환산 편수	저널별 가중치
<p>▶ 참여교수 논문실적 1건의 환산편수 = (주저자 중 참여교수 수(A)×주저자 1명의 논문 환산편수)×저널별 가중치(P) + (기타저자 중 참여교수 수(B)×기타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 × 저널별 가중치(P)</p> <p>▶ 주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min(1/(m+0.5), 0.5)$ (단, n=0일 때는 1/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 :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수 - n : 기타저자(주저자를 제외한 저자) 수 - T : 총 저자 수 (= m + n) <p>▶ 기타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n>0) = $\{1 - m \cdot \min(1/(m+0.5), 0.5)\} / n$</p> <p>▶ 예외조항 단,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주저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알파벳 순서로 저자 순서를 정하는 경우, 각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는 P/T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P=1 -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 : P=3 - 기타국제학술지 : P=1

[표5] 특허 환산 건수

특허 환산 건수	가중치
<p>▶ 발명인 1인의 특허등록 환산건수 = 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 총 발명인 수 - 국내특허등록 : P=1 - 국제특허등록 : P=2 	<p>▶ 국내특허등록 1건을 1건으로 환산하고, 국제특허등록 1건을 2건으로 환산</p> <p>▶ 국제특허의 경우 동일한 특허로 1개국을 초과하여 등록된 경우 초과국 1개국 당 0.2건을 “가중치”에 가산하되, 동일특허로는 최대 3개국까지만 가산 인정</p> <p>예 : 5개국에 개별국가별로 등록된 경우, 가중치=2.6건(국제특허 가중치 2건 + (3개국 × 0.2건) = 2.6건)</p> <p>▶ 국제특허를 PCT(WO) 출원하여 등록된 경우, 개별국가별로 등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p>

제 3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 19조 목적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0조 구성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원과 연구교수(계약교수, BK교수)로 구성한다.

제 21조 채용

신진연구인력 임용에 관한 사항은 [-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 신진연구 인력임용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 또는 추천에 의하여 모집하며 아래에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① 제출서류

신진연구인력 지원서(별지 5호 서식)

② 서류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평가서(별지 6호 서식)를 작성한다. 사업단장은 서류심사 결과 순위에 의하여 면접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면접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면접심사 평가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 채용절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총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 1순위 자는 사업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22조 계약기간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며 계약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제 23조 의무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신진연구인력의 BK21 플러스 사업의 기여도(논문, 학회발표 실적)와 학과 기여도에 따라 재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4조 시간강의

① 박사후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6학점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② 연구교수

연구교수는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주6학점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제 4장 산학협력전담인력 활용 지침

제 25조 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6조 자격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자 또는 산학협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 27조 산학협력전담직원의 정의

산학협력전담직원이라 함은 신약개발연구와 관련된 산업체를 발굴하여, 협동과정에 소속된 참여 학생들의 취업연계·현장실습·산학공동과제, 참여교수의 연구 수행 지원 등 산학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28조 임용절차

-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업단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위촉 추천한다.
 1. 사업단장 추천서
 2. 산학협력전담직원 활용계획서
 3. 근로계약서
 4. 학력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이력서

제 29조 임용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0조 임무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제3조에 정의한 사업단 내의 산학협력업무에 전념한다. 단,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 31조 처우

산학협력전담직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BK21플러스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 32조 해촉

-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1. 제 31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장은 총장에게 해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 5장 국제화 경비 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 장·단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제 33조 목적

사업단 구성원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술 및 지식의 동향 파악 등 국제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4조 국제학술대회지원

- ①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논문발표자에게 지원하며, 특별한 경우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 ② 체제비는 2주 이내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타 사업의 지원액과 사업단 지원 금액의 합이 본교 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원금액은 항공료의 실제소요 금액 및 체제비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만큼, 체제비는 실비용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국제학술대회 참가 전 국제학술대회 참가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8호 서식)
- ⑤ 국제학술대회 참가일로부터 4주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류

1.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 1부(별지 9호 서식)
 2.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1부(별지 8호-첨부 2 서식)
 3. 서약서 1부(별지 10호 서식)
 4. 발표논문 및 학술대회 팸플렛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5. 항공권 INVOICE 1부
 6. 학회 Accept Letter 1부
 7.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⑤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1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

1. 국제학술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별지 11호 서식)
2. 항공권 보딩패스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출입국 stamp 확인 및 신분확인 되는 면 각 1page) 1부
 4.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5.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⑥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 35조 장·단기 해외연수규정

- ① 사업단에서 규정하는 해외연수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 1년 이내의 연수 활동을 하고, 단기해외연수는 15일 이내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 ② 해외연수 지원자는 장·단기해외연수 신청서(별지 12호 서식), 서약서(별지 13호 서식), 성적증명서, 외국어능력 평가확인서 및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장·단기연수지원대상은 사업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②항을 근거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 ④ 해외연수 대상자는 3항을 근거로 연수대상기관, 연구 관심 분야,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하여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 ⑤ 지원금액은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 ⑥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세부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연수 종료 시 최종보고서(별지 14호 서식)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하고, 장기연수생의 경우에는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36조 해외석학초빙·활용규정

- ① 해외석학은 해외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원 또는 연구원을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해외석학 초빙 경비지원 신청서(별지 15호 서식) 및 강연 계획(별지 16호 서식)을 제출한다.
- ②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 ③ 지원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강사료 및 모든 수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 ④ 해외학자의 강사료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 ⑤ 경비지급을 위해 해외석학 초빙 경비 청구서(별지 17호 서식) 및 강연 결과보고서

(별지 18호 서식)를 제출한다.

부칙(2016. 6. 1)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8)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 2)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6. 7)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목 차 【별지 서식】

[별지 1호]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의무규정에 대한 서약서	1
[별지 2호]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생 포기 사유서	2
[별지 3호]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생 활동계획서	3
[별지 4호]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생 활동보고서	4
[별지 5호] BK21 플러스 사업 신진연구인력 지원서	5
[별지 6호] BK21 플러스 사업 신진연구인력 채용 서류심사 평가서	8
[별지 7호] BK21 플러스 사업 신진연구인력 채용 면접심사 평가서	9
[별지 8호] BK21 플러스 사업 국제학술대회 참가 예정 확인서	10
[별지 9호] BK21 플러스 사업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	13
[별지 10호] 서약서	14
[별지 11호] BK21 플러스 사업 국제학술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15
[별지 12호] BK21 플러스 사업 장기해외연수 신청서	17
[별지 13호] 서약서	18
[별지 14호] BK21 플러스 사업 장기해외연수(활동, 최종) 보고서	19
[별지 15호] 해외석학 초빙 경비지원 신청서	20
[별지 16호] 해외석학 초빙 강연 계획(안)	21
[별지 17호] 해외석학 초빙 경비 청구서	22
[별지 18호] 해외석학 초빙 강연 결과보고서	23
[별표 5호]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23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의무규정에 대한 서약서

학과 : _____ 과정 : 석사 / 박사 학번 : _____

성명 : _____ 연구자등록번호 : _____

상기인은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에 참여하고, 하기의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의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공동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의무규정

1. 참여기간 중 주 40시간 이상 수업 및 연구에 전념해야 하고,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또한 사업단 참여기간 중 휴학, 전과, 교환학생 등 학적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 이를 성실히 신고해야한다.
2. 참여기간 중 부업, 취업 등으로 4대 보험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3. 참여기간 중에 취업(무보수 자격증/명의대여 포함), 보수를 받는 부분취업, 인턴(사업단에서 파견하는 해외 및 산학협력 인턴 등은 제외)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날 때는 사전에 사업단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사업단의 요구 시에는 해당 월부터 지원된 지원금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4. 위촉연구원, 파트타임 업무, 교외 프로젝트 참여, 시간강의 등의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참여기간 중 또는 참여 후에도 BK21 플러스 사업 지원내역, 졸업 후 취업현황과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하고 한국연구재단에 구축될 DB 입력을 동의해야한다.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생 포기 사유서

성 명 :
학 과 :
과 정 :
학 번 :

본인은 20__학년도 __학기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생으로 지원받는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포기 사유서를 제
출합니다.

- 사유 :

년 월 일

본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공동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생 활동계획서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학 과		과 정	석사/박사 과정()학기 재학
지원기간	년 월 ~ 년 월 (6개월)			
세부계획				
기대효과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p> <p style="text-align: center;">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p>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생 활동보고서

학 생	성 명		
	학 과		
	학 번		
	과 정	석사 / 박사 과정 ()학기 재학	
	활동 기간		
	활동내용 및 주요성과		
지 도 교 수	연 구 장 학 생 활 동 평 가	기 술 력	
		성 실 도	
	업무 기여도		
	기타의견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학 생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p>			

[별지 5호 서식]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신약개발학과 2016년도 BK21 플러스사업 신진연구인력 지원서

1. 지원사업단 및 지원분야

사 업 단 명	지 원(전공)분 야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이공계열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국 적
주민등록 번호	- (만 세)	
주 소	우편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집 : 휴대폰 : E-mail :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크기 : 가로 5cm× 세로 7cm

3. 학력사항

학위과정	기 간		학부(과)	전 공	학위명	대 학 (원) <수여기관>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학 사						
석 사						
박 사						
학 위 논문명	석사			지도교수 (소속·직· 성명 순으로 기재)	석사	
	박사				박사	

4. 경력사항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며, 준경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기 간(년월일 기재)	근 무 기 관 명	직 위	담 당 업 무
-			
-			
-			
-			

기간(년월일 기재)	근무기관명	직위	담당업무
-			
-			

5. 연구업적 목록

연구업적 현황		저서(권), 논문(편), 기타(편)				
제 목	발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저자		본인 확인 (인)
				인원	공동연구 내역	

※ 1. 대학원 재학 이후부터 응모시점까지 발표된 연구업적을 기재하되, 심사대상 최근 연구실적물 목록도 포함하여 작성

하되, 최근 연구실적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작성함.

2. 연구업적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를 기재
3. “분류”란에는 총괄연구업적을 “저서”, “논문”,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
4. “공동연구내역”란은 저자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이면 “공동 연구의 제1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기재

※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 박사학위논문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와 이에 준하는 정규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논문 (총설, Proceeding, Book chapter는 제외)
- 단행본 저서 (역서 및 편저는 제외)

6. 현재 투고중인 연구업적 목록 및 향후 투고예정인 연구업적 목록

저 서(권), 논 문(편), 기 타(편)						
제 목	투고(예정)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저 자		본인 확인 (인)
				인원	공동연구 내역	

7.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학술대회명	발표 년월일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개최국가 (도시)

- 첨부서류 :
1. 연구실적물 (박사학위논문, 연구실적물 각 1부 포함)
 2. 경력증명서
 3. 학위 및 성적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4. 자기소개서

위와 같이 신진연구인력 채용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BK21 플러스 신진연구인력 채용 서류심사 평가서

연구분야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성 명		심사위원	직 급 : 성 명 : (인)
구 분	심 사 항 목	심사등급(점수)	점수	비고	
1. 기본자질 (20점)	1-1 취득학위 심사	A(5) B(0)			
	1-2 경력 심사	A(5) B(3) C(1)			
	1-3 연구 실적물 우수성 심사	A(10) B(5) C(3)			
2. 전공 및 경력의 채용분야와의 일치정도 (10점)	2-1 석박사 전공분야 또는 산업체 경력의 채용분야와의 일치정도 심사	A(10) B(5) C(0)			
3. 연구 계획 (30점)	3-1 논문(SCI(E) accept기준), 특허 (출원기준) 연구실적 계획서 우수성 심사	A(30) B(20) C(10)			
합 계		총 60 점			

BK21 플러스 신진연구인력 채용 면접심사 평가서

심사위원 : 직급

성명 : (인)

채 용 분 야	수요지향적 융복 합 신약개발 창의 인재양성사업단	성 명		생년월일 (연령)	
학 력	대 학 : 학과 : 학사				
	대학원 : 학과 : 석사				
	대학원 : 학과 : 박사				
주 요 경 력					
면 접 심 사	점수 (40점만점)	면 접 의 건			

[별지 8호 서식]

BK21 플러스 사업 국제학술대회 참가 예정 확인서

● 연구실명 :

학술대회명	학술대회기간 (YYMMDD)	개최기관 (공동개최기관)	개최장소	발표확정 통보일 (예정일)	발표자	논문명	소요예산 (원)
※ 예시 Wimob 2011	111014 -111017	[Organized by] The ARC (Australian Research Council), University of Melbourne [Technical Co-Sponsors or [Co-Organized by]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Sponsors] ARC (Australian Research Council), University of Melbourne	프랑스	110310	1)OOO 2)XXX	1)----- 2)-----	5,469,600
합 계					총2명		5,469,600

- ※첨부 1. 여비산출내역
2.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위와 같이 국제학술대회에 참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공동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여비산출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출장기간	운임(a)	일비(b)	숙박비(c)	식비(d)	계(e=a+b+c+d)	비고
※ 예시 1	OOO	111014~111017 (3박4일)	1,150,000	124,800	313,200	235,200	1,823,200	[나등급]
2	XXX	111014~111017 (3박4일)	1,150,000	124,800	313,200	235,200	1,823,200	[나등급]
	지도교 수명	111014~111017 (3박4일)	1,150,000	124,800	313,200	235,200	1,823,200	[나등급]
합 계			3,450,000	374,400	939,600	705,600	5,469,600	

※ 환율은 1,200원으로 적용.

※ 운임비는 인터넷에 공지된 가격 기준(증빙 제출)

※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참여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첨부 2]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 기준 확인서

◎학술회의명:

◎개최기간:

No.	기 준	상세내용
1	참석하는 나라가 4개국 이상인가?	참가국수:
2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인가?	총 구두발표 논문 수: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인가?	외국인 발표 비율:

☞ 해당 학회의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에 개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확인사이트(혹은 학회 web site)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학 생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공동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BK21 플러스 사업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교 수	성명:	소속:	연락 전화:	전자우편:
학 생	성명:	소속:	학번:	(석사 / 박사과정)
			연락처:	
국제학술대회 관련				
학술대회명	(국문)			
	(영문)			
주관 기관명				
개최 기간			개최 장소	
발표 논문명	(국문)			
	(영문)			
저자명 (논문기입순)				
타 지원기관명 및 금액	타 지원 기관 명칭			
	지원 금액		만원	
지원 신청액	교 수			학 생
경비지급 계좌번호	교 수			
	학 생			
<p>위와 같이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자 지원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학 생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지도교수 : _____ [서명 또는 인]</p> <p>첨부 : ① 서약서 각 1 부 ②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1 부 ③ 발표논문 1 부 ④ 출장신청서(학생용) 1부 ⑤ 항공권 인보이스 1부.[추후 예약 후 제출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p>				

서 약 서

본인은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를 수령한 이후, 동일한 국제학술회의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참가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단 지원 한도액과 타 기관 지원액의 합이 공무원 여비 규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참가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BK21 플러스 사업 국제학술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참가자	교 수: (연락처:) 학 생: (연락처:)			
학술대회 관련	국제 학술 대회명	국문:		
		영문:		
	주관 기관			
	개 최 지			
참가기간	. . . ~ . . . (일간)			
지 원 액	총 원			
	교 수		학 생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지원을 받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그 활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p> <p>첨부 : ① 여권사본⁽¹⁾ ② 항공권 원본 및 INVOICE ③ 등록증(영수증)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사본⁽²⁾</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참 가 자 : 학 생 (인) 교 수 (인)</p> <p>⁽¹⁾사진, 출입국 날짜가 찍힌 쪽 ⁽²⁾논문명과 발표자 이름이 나와 있는 목차</p> <p style="text-align: center;">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p>				

1. 국제학술대회 명칭:
2. 기 간:
3. 개 최 장 소:
4.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수행한 사항
5. 국제학술대회 주요 참가국 및 참가자수
 - 참가국 수 (국제 연수의 경우) : 개국
 - 참가자 수 : 명
 - 전체발표논문 중 해외논문편수 : 총 편에서 편
6. 국제학술대회의 학술적 의의
7. 국제학술대회 분야의 연구 동향 및 전망
8.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관련한 건의사항
9. 기타 참고 사항

서 약 서

본인은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장·단기 해외연수 참가 경비를 수령한 이후, 타 기관으로부터 참가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단 지원 한도액과 타 기관 지원액의 합이 공무원 여비 규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외연수 참가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BK21 플러스 사업 장기해외연수(활동, 최종) 보고서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학과		학기		학번
	연락처	(전화) (이메일)		(휴대폰)	
연 수 내 용	연수기관				
	연수기간	20 . . . ~ 20 . . . (개월간)			
	(별지첨부 가능)				
<p>상기 본인은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바, 연수 결과에 대한 (활동,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학 생 : _____ [서명 또는 인]</p> <p>별첨서류 : 연수내용 및 결과</p> <p style="text-align: center;">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p>					

해외석학 초빙 경비지원 신청서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 해외석학 초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교수

성명 :

소속 :

연락처 :

해외석학 초빙 관련

강연 장소

강연 제목

연사 정보

성명

소속

E-mail

연락처

신청액
(예상금액)

강사료

첨부 : 이력서 1부

위와 같이 해외석학 초빙 경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해외석학 초빙 강연 계획(안)

1. 목적

2. 강연 일정

일 시 :

장 소 :

주 관 :

3. 연사 소개

4. 강연 내용

5. 예산(안)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지 출 과 목
강사료	1호 해외전문가 강사료		국고-국제화경비-해외석학초빙
체재비			
기 타			
계			

해외석학 초빙 경비 청구서

본인은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에서 강연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료를 청구합니다.

강연 일시		
강연 장소		
강연 제목		
개인정보	성 명	
	소 속	
	주민번호	
	계좌정보	
금 액 (세액 포함)	강사료	

첨부 : 이력서, 발표자료, 여권사본, 방명록, 세미나 사진, e-ticket, 보딩패스

위와 같이 해외석학 초빙 경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연사 : (인)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수요지향적 융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해외석학 초빙 강연 결과보고서

1. 목적

2. 강연 일정

일 시 :

장 소 :

주 관 :

3. 연사 소개

4. 강연 내용

5. 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지 출 과 목
강사료	1호 해외전문가 강사료		국고-국제화경비-해외석학초빙
체재비			
기 타			
계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사업단(팀)명 : (사업단(팀)장 :)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 참여구분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과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인합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단(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비롯한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각 개인의 통장·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